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476”을 “477”로, 일반직 계 “475”를 “476”으로, 행정주사
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
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
5”를 “56”으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480”을 “481”로, 일반직 계 “479”를 “480”으로, 행정주사
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
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
5”를 “5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476</u>	• <u>477</u>	+1
일반직 계	• • <u>475</u>	• • <u>476</u>	+1
행정주사 • 사회복지주사 • 보건주사 • 약무주사 • 간호주사 • 전산주사 • 통계주사 • 공업주사 • 시설주사 • 방재안전주사 •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• • <u>55</u>	• • <u>56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6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480</u>	• <u>481</u>	+1
일반직 계	• • <u>479</u>	• • <u>480</u>	+1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 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 산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 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• <u>55</u>	• <u>56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